

참고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전

1. 개정이유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린 뉴딜 정책과 첨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침수 피해 방지 등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시설 설치 기준 및 안전정보 관리 강화(안 제5조 및 제6조의2)

둔치주차장의 침수방지 안전시설을 의무화하고 주차장정보망에 경사진 주차장 등 안전관리 정보 등을 관리 대상 정보에 추가함

나. 그린 뉴딜 및 첨단 산업 관련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규정 완화(안 제6조)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중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면적의 2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발전시설과 집배송시설을 부대시설의 종류에 추가함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 신설 (안 제6조)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충전시설·구역 제외)을 설치하여야 함.

라.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한 근거 명확화(안 제6조의2)

지역주민 전용 노상주차장의 유휴시간대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리. 기타 현실 운영에 맞게 현행 규정 정비(안 제31조의7)

방법 CCTV수와 일치해야하는 녹화장치의 “모니터수”를 “화면수”로 개정하고, 주차장정보망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토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0. 8. ~ 9.) 예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가목 중 “지역”을 “지역(차량의 통제·감시·대피 안내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1호나목 중 “모니터 수”를 “화면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충면적”을 “충면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면적은 제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충전시설”을 “충전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집배송시설”로 한다.

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구역 제외)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① 법 제21조의4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안전실태조사에 관한 정보

2. 법 제6조에 따른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 위치, 경사도 등 현황과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대형주차장의 안전관리,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 안전사고 현황 등 안전 관련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라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제6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의 안내시설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5조제3호의 종전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차량의 통제·감시·대피 안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 -. ----- ----- -----.
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u>지역</u>	가. ----- ----- ----- ----- <u>지역(차량의 통제 · 감시 · 대피 안내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u>
나. ~ 라. (생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4. ~ 9. (생략)	4. ~ 9. (현행과 같음)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	11. ----- -----

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법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생략)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한다.

다.·라. (생략)

12. ~ 15. (생략)

<신설>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

-----.

가. (현행과 같음)

나. -----

화면수-----.

다.·라. (현행과 같음)

12. ~ 15. (현행과 같음)

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 구획(충전시설·구역 제외)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

----- 총면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면적은 제외)-----

-----.

1. (현행과 같음)

2. -----

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2의2. ~ 4. (생략)

⑤ ~ ⑦ (생략)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생략)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 충전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집배송시설

2의2. ~ 4.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

제18조(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①
법 제21조의4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안전실태조사에 관한 정보
2. 법 제6조에 따른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 위치, 경사도 등 현황과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대형주차장의 안전관리,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지도 점검, 안전사고 현황 등 안전 관련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4

제4항에 따라 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